

민간경비론(이론서)

편저자 : 송 광 호

※ 정오 및 오타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p.72, 96, 98, 99, 100, 101, 108, 250, 251, 252, 254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p.199 테러의 유형 전체변경	(1)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2)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②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③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③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4)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①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② ①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③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④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⑤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5)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②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③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④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출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p.256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p.272 방화벽 (2)의 내용을 위 칸의 출입통제 (4)로 이동	[방화벽] (2) 컴퓨터실은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출입통제] (4) 컴퓨터실은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민간경비론(이론서)

▶p.287 문제 1번 문항 ①	국민안전처	소방청
▶p.287 문제 1번 해설 ①	"긴급구조기관"이란 ㉠ 국민안전처, ㉡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p.292 문제 4번 해설의 조문	[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p.305 문제 20번 해설의 조문	[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p.306 문제 21번 해설의 조문	[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p.12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2014, 387~401쪽 참고) 밑에 표 삽입

개념	(1) 범죄예방이론의 상황적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이론에 기인한 이론 →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행동 및 심리적 성향을 자극한다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행태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 ① 여기에서 '환경'이란 인간이 접촉하고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함. ② '설계'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이와 관련된 계획과 도면, 세부내역을 마련하는 일을 의미함. ③ CPTED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말함 ←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음.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은 최첨단 범죄예방 환경설계로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억제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시큐리티시스템과 주차시스템을 접목시키는 조직작기계적 접근방법이 많이 고려되고 있음. (3)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① 개념 : (범죄인 교화보다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 ② 전통적 CPTED는 공격자가 보호대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예를 들면, 보호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깊은 함정을 파놓은 일, 성벽을 쌓아 놓은 일, 문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함), 현대적 CPTED는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함. ③ 전통적·고전적 CPTED 접근방식은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방법(THA : Target Hardening Approach)을 강조하여, 가급적 공격자가 보호하는 대상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물리적 접근통제 방법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짐. 예 과거 로마교황에 대한 암살위협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교황의 대중행사 참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자는 주장 ④ 현대적 의미의 CPTED는 소극적인 THA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보호대상물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는 것을 말함. 예 카톨릭계 인사들은 교황의 공식행사참석은 그대로 하되, 투명한 방탄유리차량을 이용하여 교황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4) CPTED의 기본전략 ① CPTED의 기본전략은 ㉠ 자연적인 접근통제, ㉡ 자연적인 감시, ㉢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출발함(제1차적 기본전략). ② '접근통제'는 범죄의 기회를 줄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설계개념임 → 접근통제 전략은 전형적으로 ㉠ 조직적인 통제(경비원 운용 등), ㉡ 기계적인 통제(장벽, 차단장치, 잠금장치 등), ㉢ 자연적인 통제(공간 구획 등)로 구분됨. ③ '감시'는 침입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설계개념임 → 감시전략은 접근통제와 마찬가지로 ㉠ 조직적인 감시(경비원 배치 및 순찰활동 등), ㉡ 기계적인 감시(경비조명, 감시카메라 등), ㉢ 자연적인 감시(창문 등)로 분류됨.
----	--

민간경비론(이론서)

		④ 전통적인 접근통제와 감시는 환경의 이용을 최소화 하거나 무시하면서 단지 조직작기계적 예방방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⑤ 최근에는 조직작기계적 전략보다는 자연적인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 → 1차적으로 자연적 접근통제와 감시방법을 고려하고 2차적으로 조직작기계적 접근통제와 감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⑥ 영역 ㉠ '영역'이란 사람이 평상시 익숙하고 친숙하여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영역성'이란 어느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이용을 의미하며, 영역적 통제는 경계의 설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영역성은 특정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 또는 지배의식을 의미하는 것임. ㉡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일정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음 → 바로 방어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임. 예)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집)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또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둘러싼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영역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접근통제와 감시와 같은 물리적 설계가 영역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소유의식 및 소속의식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배타적 영역성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환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영역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위협을 느끼게 할 것임. ㉣ 단글(J. Dingle)의 '동심원영역론'도 환경설계를 통한 접근방법(CPTED)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민간경비활동 중 시설경비에 서 소개함) ⑦ CPTED는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작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음. (5) 목표 :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킴.
유래	방어 공간	(1) 제이콥스(Jacobs) : 주택의 고층화가 범죄유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 도로상의 눈을 고려한 건물방향, 도로가 빈번하게 이용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장함. (2)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 저서 「방어공간」) ① 공동주택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봄. ② 공동주택의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입증함. ③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PTED)이론의 성립에 영향을 줌. ④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태만히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봄.
	제프리	1971년 최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기본 원리 (전략)	자연적 감시	(1) 보행자 얼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등의 밝기를 높이는 것 같은 가시권 확보를 통해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Natural Surveillance) (2)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3) 예) 외진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하기
	자연적 접근 통제	(1)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Natural Access Control) (2) 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행로의 설치 :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 설치 등
	영역성의 강화	(1) 영역성(Territoriality)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2) 예)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을 위해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하기
부가 원리	활동성의 증대 (활동의 활성화)	(1) 활동성(Activity Support)의 증대 :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2) 예) 마을 입구에 정자 등을 설치하기,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증대
	유지 관리	(1) 최초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 '깨진 유리창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함. (2) 예) 시설물 파손 즉시 개·보수, 조명·조경의 관리·유지